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 **변경 사유** :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②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5. 3. 20.

☐ **변경 내용**

구분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5. 1. 31. 기준**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5. 2. 11. 기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5. 2. 28. 기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5. 2. 28.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5. 2. 28. 기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표준편차 : 3.29% 〈신 설〉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6.12%** - 위험등급 변경 내역 : **2025.3.20 :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에서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기준으로 변경**

		〈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표준편차	〈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위험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2025. 1. 31. 기준** **2025. 2. 11. 기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 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 년 1 월 1 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5. 2. 11. 기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5. 2. 11. 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5. 2. 11.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5. 2. 28. 기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5. 2. 28. 기준**